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2호서식] <개정 2018. 5. 28.>

제 호

매립시설 []설치 []정기 []사용종료·폐쇄 []사후관리 정기 검사결과서

신청인	①상호(명칭)		②업 종	
	③성명(대표자)		④사업자등록번호	
	⑤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:)			
⑥시설설치장소(주소)		(전화번호:)		
⑦검 사 기 간		(일간)		
⑧현 장 검 사		(일간)		
⑨승인(허가) 내용	매립대상 폐기물			
	매립면적	(㎡)	매립용량	(㎥)
	침출수 처리시설	처 리 방 법		
		용 량	(㎥/일)	
	그 밖의 사항			
⑩시설제원				
매립면적		(천㎡)	매립용량	(천㎥)
최종복토 예정면적 *(설치검사의 경우에만 작성)*		(㎡)		
차수시설				
침출수 처리시설	처리가능 용량			
	처리방법	1차:		
		2차:		
		3차:		
그 밖의 시설				
⑪검 사 결 과		(항목별 검사결과 붙임)		
⑫ 검 사 자		(인)	(인)	(인)
⑬ 특기사항(검사자 의견)란		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제1항·제2항, 제50조제1항·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, 제69조의2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시설 ([]설치, []정기, []사용종료·폐쇄, []사후관리 정기) 검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 검사기관의 장 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